

【 3 】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0. 6. 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정이유

주민의 자치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안제2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第12條 (住民의 資格)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者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이 된다.

第13條 (住民의 權利) ①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財產과 公共施設을 이용할 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균등하게 行政의 恵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國民인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이하 “地方選舉”라 한다)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

第13條의2 (住民投票)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住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 사항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 불일 수 있다.

② 住民投票의 대상·發議者·發議要件·기타 投票節次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4·3·16)

第13條의3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 地方自治團體의 20歲以上의 住民(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舉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 “20歲以上의 住民”이라 한다)은 20歲以上의 住民 總數의 20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0歲以上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1. 地方稅·使用料·手數料·負擔金의 試課·徵收 또는 減免에 관한 사항

2. 行政機構의 設置·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를 반대하는 사항

② 地方自治團體의 20歲以上의 住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の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접수한 날부터 7日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閲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審查·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20歲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住民登録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録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

⑨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8·31)

第13條의4 (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이상의 住民은 20歲이상의 住民 總數의 50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20歲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搜査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에는 그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인구 50만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 50만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 (연서 주민수) ①법 제13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는 별표 4와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3 (청구인의 대표자증명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덧붙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20세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4 (서명요청절차) ①대표자는 20세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20세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20세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누구든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제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1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5 (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한 자가 당해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당해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6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이상이 된 때에는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7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시·군·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8 (청구요건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9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0 (주민부작성관등)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이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내용이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일괄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1 (주민의 감사청구절차) ①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0조의5, 제10조의6제2항, 제10조의7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의8의 규정은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20세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4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이상이 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⑤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7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2 (감사절차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3 (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4 (부처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지원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5 (공표방법등)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 및 제10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6 (보고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한 때와 법 제1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7 (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18 (청구서등의 서식)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 제1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2 장 조례와 규칙

제10조의19 (조례·규칙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③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 ④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 6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 6 항 후단의 규정에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 행령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5·7·1>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7·1>

제13조 (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3 장 지방의회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 (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12·31>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 2 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95·12·30>

(전문개정 95·7·1)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 2000·1·10 행정자치부령 제87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와 감사청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 (대표자증명서) 영 제10조의3제 2 항 및 영 제10조의11제 2 항의 규정에 의 한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0조의4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 3 호서식,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청구인명부) 영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 (이의신청서) 영 제10조의7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 (주민감사청구서 등) 영 제10조의11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다.

제 8 조 (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영 제54조의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대상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례의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를 청구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 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및 기타 관련자료			
비 고 : 청구취지 및 이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 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 구 종 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제 2 항 및 제10조의11제 2 항의 규정 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20세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	
비 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청구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 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 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 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 명부의 표지)

- ()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
 () 감사청구

청 구 인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 시·도 ○○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 ○○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 대표자 (서명·날인)
 수임인 (서명·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
 명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
 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 구 인 명 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
에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 의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 6 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 명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7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210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 7 호서식)

주 민 감 사 청 구 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청구 대상사무 및 청구취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11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청구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비 고 : 청구취지 및 이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 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 8 호서식〕

() 협의체 설립(변경) 신고서		
협의체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 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의체 설립(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임원과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1부		
비 고 : ()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장·군수·자치구의회의 의장의 협의체를 기재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관인생략

“21세기 도전·창조·희망의 경기”

경 기 도

우 480-020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 / 전화 (0351)870-2053 / 전송 870-2679
 감사과 과장 최종권 감사담당 윤항덕 담당자 김범수



문서번호 행정(2)감사 16080 - 309

시행일자 2000. 03. 16 ()

공개여부 (공개)

받 음 수신처참조

참 조

선 찰	실장 <i>윤항덕</i>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i>선택단계</i> <i>승인</i>
	번호	·	<i>1015</i>
	처리 과	·	<i>감사과</i>
	담당자	·	<i>김용희</i>
	심사자	·	
		심사일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준칙(안) 통보

- 감사 16800-176(2000.3.14)호와 관련입니다.
-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의 조례에 참고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회와 긴밀히 협의,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 바라며.
- 조례제정 이전에 제출되는 주민감사청구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대강의 감사청구인수를 안내하는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준칙(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전결 감사과장 최종권

수신처 : 버(감사과장)

○○시·군조례 제 호

○○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명 이상 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인생략

“ 21세기 도전 · 창조 · 희망의 경기 ”

경 기 도

우 480-020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 / 전화 (0351)870-2053 / 전송 870-2679

감사과 과장 최 종 권 감사담당 유 향 덕 담당자 김 범 수



문서번호 행정(2)감사 16800 -308

시행일자 2000. 03.16()

공개여부 (공개)

받 음 수신처참조

참 조

선 람	호원동 119	870-2053	경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1216		·	
	처리 과	감사과		·	
	담당자	김용훈		·	
	심사자		심사 일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 감사 16800-174(2000. 3.13)호와 관련입니다.
-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난 3. 2부터 본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18
 -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87호, 2000.1.10)
- 따라서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바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과 제도시행관련 홍보 · 관련서식 비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 조례제정 이전에 제출되는 주민감사청구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대강의 감사청구인수를 안내하는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 기 도 지 사

전결 감사과장 최종권

수신처 : 버(감사과장)

양주군 공고 제 2000 - 68 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20세 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3월 2일

양 주 군 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양 주 군	74,988명	2,500명

2. 읍·면·동별 연령별 인구(한국인)(9-1.)

양주군 1999. 12. 31 현재

(단위 : 명)

연령별	양 주 군			1회천읍			2주내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08,309	56,117	52,192	35,935	18,633	17,302	16,962	8,714	8,248
0~4세	8,523	4,439	4,084	2,917	1,520	1,397	1,270	660	610
0 세	1,548	818	730	532	285	247	220	115	105
1 세	1,592	836	756	537	274	263	247	120	127
2 세	1,830	936	894	628	330	298	281	142	139
3 세	1,731	897	834	606	327	279	258	142	116
4 세	1,822	952	870	614	304	310	264	141	123
5~9세	9,229	4,760	4,469	3,417	1,760	1,657	1,332	664	658
5 세	1,878	967	911	681	362	319	270	136	134
6 세	1,884	967	917	637	321	316	291	144	147
7 세	1,864	971	893	723	375	348	250	120	130
8 세	1,919	968	951	733	373	360	278	143	135
9 세	1,684	837	797	643	329	314	243	121	122
10~14세	7,312	3,706	3,606	2,801	1,426	1,375	1,100	557	543
10 세	1,429	718	711	545	283	262	195	94	101
11 세	1,539	798	743	583	308	275	232	120	112
12 세	1,407	699	708	572	275	297	199	108	91
13 세	1,492	767	725	550	269	281	237	127	110
14 세	1,445	726	719	551	291	260	237	108	129
15~19세	8,022	4,155	3,867	2,716	1,384	1,332	1,276	649	627
15 세	1,475	759	716	565	300	265	228	118	110
16 세	1,610	869	741	570	303	267	252	145	107
17 세	1,629	843	786	548	275	273	252	122	130
18 세	1,655	858	797	525	253	272	275	139	136
19 세	1,653	826	827	508	253	255	269	125	144
20~24세	7,519	3,981	3,538	2,372	1,270	1,102	1,150	622	528
20 세	1,543	756	787	475	237	238	235	116	119
21 세	1,347	720	627	432	228	204	221	130	91
22 세	1,493	777	716	466	245	221	210	113	97
23 세	1,440	820	620	475	270	205	212	121	91
24 세	1,696	908	788	524	290	234	272	142	130
25~29세	9,953	5,221	4,732	3,289	1,699	1,590	1,559	786	773
25 세	1,706	970	736	548	290	258	265	139	126
26 세	1,979	1,041	938	685	359	326	314	160	154
27 세	1,975	1,032	943	640	335	305	285	157	123
28 세	2,106	1,083	1,023	686	350	336	340	172	163
29 세	2,187	1,095	1,092	730	365	365	355	158	197
30~34세	11,283	5,882	5,406	3,964	1,998	1,966	1,761	921	840
30 세	2,232	1,140	1,092	736	371	365	378	185	193
31 세	2,372	1,192	1,180	833	415	418	372	170	202
32 세	2,180	1,108	1,072	795	373	422	321	166	135
33 세	2,188	1,194	994	769	425	364	331	160	151
34 세	2,316	1,248	1,068	811	414	397	359	200	159

※ 인구총수 : 108,309 명
- 20세미만 : 33,086 명

* 성거천이 있는 20세 이상주민수 : 234 ----- ②

계 25,223 명 ----- ① ⇒ ① - ② = 14,988 명

2. 읍면동별 연령별 인구(한국인)(9-2)

양주군 1999. 12. 31 현재

(단위 : 명)

연령별	3온현면			4남면			5광적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9,048	4,766	4,282	9,279	4,833	4,446	11,233	5,880	5,353
0~4세	623	308	315	629	309	320	778	399	379
0 세	119	69	50	122	59	63	140	68	72
1 세	104	55	49	127	57	70	132	76	56
2 세	136	61	75	126	62	64	179	87	92
3 세	120	50	70	121	53	68	157	76	81
4 세	144	73	71	133	78	55	170	92	78
5~9세	629	346	283	702	384	318	955	487	468
5 세	117	67	50	147	74	73	189	97	92
6 세	131	70	61	142	77	65	200	103	97
7 세	122	70	52	120	66	54	215	109	106
8 세	141	72	69	153	81	72	181	86	95
9 세	118	67	51	140	86	54	170	92	78
10~14세	613	302	311	630	323	307	720	354	366
10 세	123	61	62	130	76	54	139	70	69
11 세	121	64	57	126	69	57	144	71	73
12 세	111	55	56	122	53	69	136	54	82
13 세	125	63	62	131	66	65	158	85	73
14 세	133	59	74	121	59	62	143	74	69
15~19세	740	379	361	705	360	345	860	449	411
15 세	127	58	69	109	53	56	150	70	80
16 세	155	82	73	150	73	77	158	86	72
17 세	143	82	61	151	81	70	194	101	93
18 세	159	87	72	146	78	68	174	94	80
19 세	156	70	86	149	75	74	184	98	86
20~24세	730	379	351	669	347	322	810	425	385
20 세	165	77	88	155	69	86	152	75	77
21 세	117	60	57	111	61	50	148	79	69
22 세	156	75	81	130	71	59	172	92	80
23 세	129	74	55	113	58	55	160	98	62
24 세	163	93	70	160	88	72	178	81	97
25~29세	821	489	332	804	470	334	981	554	427
25 세	149	96	53	146	83	63	191	125	66
26 세	162	90	72	173	99	74	187	113	74
27 세	162	93	69	177	105	72	198	107	91
28 세	172	102	70	153	88	65	207	116	91
29 세	176	108	68	155	95	60	198	93	105
30~34세	772	414	358	820	438	382	1,105	581	524
30 세	140	73	67	175	98	77	211	109	102
31 세	163	94	69	158	77	81	236	122	114
32 세	152	73	79	149	80	69	215	108	107
33 세	148	76	72	183	99	84	209	113	96
34 세	169	98	71	155	84	71	234	129	105

2. 읍면동별 연령별 인구(한국인)(9-3)

양주군 1999. 12. 31 현재

(단위 : 명)

연령별	6백석면			7장홍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7,238	8,833	8,405	8,614	4,458	4,156	0	0	0
0~4세	1,702	911	791	604	332	272	0	0	0
0 세	310	170	140	105	52	53	0	0	0
1 세	322	184	138	123	70	53	0	0	0
2 세	348	179	169	132	75	57	0	0	0
3 세	359	191	168	110	58	52	0	0	0
4 세	363	187	176	134	77	57	0	0	0
5~9세	1,611	826	785	583	293	290	0	0	0
5 세	342	166	176	132	65	67	0	0	0
6 세	362	179	183	121	73	48	0	0	0
7 세	325	181	144	109	50	59	0	0	0
8 세	316	162	154	117	51	66	0	0	0
9 세	266	138	128	104	54	50	0	0	0
10~14세	992	510	482	456	234	222	0	0	0
10 세	203	89	114	94	45	49	0	0	0
11 세	231	119	112	102	45	57	0	0	0
12 세	180	109	71	87	45	42	0	0	0
13 세	201	107	94	90	50	40	0	0	0
14 세	177	86	91	83	49	34	0	0	0
15~19세	1,109	611	498	616	323	293	0	0	0
15 세	203	109	94	93	51	42	0	0	0
16 세	207	115	92	118	65	53	0	0	0
17 세	220	126	94	121	56	65	0	0	0
18 세	240	136	104	136	71	65	0	0	0
19 세	239	125	114	148	80	68	0	0	0
20~24세	1,095	561	534	693	377	316	0	0	0
20 세	221	119	102	140	63	77	0	0	0
21 세	181	93	88	137	69	68	0	0	0
22 세	226	106	120	133	75	58	0	0	0
23 세	218	114	104	133	85	48	0	0	0
24 세	249	129	120	150	85	65	0	0	0
25~29세	1,705	793	912	794	430	364	0	0	0
25 세	270	149	121	137	88	49	0	0	0
26 세	309	144	165	149	76	73	0	0	0
27 세	353	154	199	160	81	79	0	0	0
28 세	375	161	214	173	94	79	0	0	0
29 세	398	185	213	175	91	84	0	0	0
30~34세	2,132	1,115	1,017	734	415	319	0	0	0
30 세	435	213	222	157	91	66	0	0	0
31 세	444	219	225	166	95	71	0	0	0
32 세	411	210	201	137	78	59	0	0	0
33 세	394	223	171	134	78	56	0	0	0
34 세	448	250	199	140	73	67	0	0	0

주민감사정구조례 주진현황

(2000. 4. 10 현재)

자치단체명	청구인수		조례 제정 추진 상황			주민청구 접수상황
	비율	주민수	진행상황	의회 의결일 (예정일)	조례 시행일 (예정일)	
경기도	1/1,000	6,000명	단체장 결재중	4월 말	5월	접수건 없음
수원시	1/600	1,000명	조례안 마련중	4. 17	5. 8	"
성남시	1/600	1,000명	입법예고중(4.12 ~ 5.1)	4. 26	4. 28	"
의정부시	1/238	1,0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말	5월	"
안양시	1/500	8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초	5월	"
부천시	1/500	1,000명	입법예고중 (4.1~4.20)	4월 말	5. 10	"
광명시	1/220	1,000명	입법예고중 (3.20~4.12)	4. 20	4. 25	"
평택시	1/200	1,2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말	5월	"
동두천시	1/ 85	600명	입법예고중(3.27~4.10)	5월 초	5월	"
안산시	1/350	1,000명	입법예고중(4.10~4.29)	5월 초	5월	"
고양시	1/350	1,500명	입법예고중(4.8~5.1)	5. 16	5월	"
파주시	1/ 90	500명	입법예고중(4.10~4.29)	5월 초	5월	"
구리시	1/ 43	1,000명	입법예고중(3.29~4.18)	5월 초	5월	"
남양주시	1/285	800명	의회 상정	4. 20	5. 10	"
오산시	1/114	500명	의회 상정	4. 29	5월	"
시흥시	1/187	1,0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초	5월	"
군포시	1/250	7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말	5월	"
의왕시	1/156	5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말	5월	"
하남시	1/ 50	1,700명	입법예고중(4.10)	5월 말	5월	"
용인시	1/245	1,000명	입법예고중(4.10)	5월 말	5월	"
파주시	1/250	500명	입법예고중(4.10)	5월 말	5월	"
이천시	1/246	500명	조례안 마련중	5월 말	5월	"
안성시	1/186	500명	입법예고중(4.1~4.20)	5월 초	5월	"
김포시	1/100	500명	입법예고중(4.3~4.23)	5월 초	5월	"
양주군	1/150	5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초	5월	"
여주군	1/144	500명	입법예고중(3.27~4.17)	5월 초	5월	"
화성군	1/263	500명	입법예고중(4.12~5.1)	5월 초	5월	"
광주군	1/172	500명	조례안 마련중	5월 초	5월	"
연천군	1/ 50	500명	입법예고중(3.27~4.17)	5월 초	5월	"
포천군	1/ 50	500명	단체장 결재중	5월 초	5월	"
가평군	1/ 50	835명	입법예고중 (3.22~4.11)	5월 초	5월	"
양평군	1/121	500명	입법예고중 (3.22~4.11)	5월 초	5월	"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186 호
2000년 4월 17일 (월)

차 래



- 양주군 고시 제 2000-54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3
- 양주군 고시 제 2000-55호 개간사업시행인가고시 5



- 양주군 공고 제 2000-203호 국토이용계획예고(안)공고 5
- 양주군 공고 제 2000-206호 양주군예기물관련자료부록·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6
- 양주군 공고 제 2000-207호 양주군예기물의배출및수수로등의부록·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 6
- 양주군 공고 제 2000-208호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안)입법 예고 8

회								
람								

발행 : 양주군

편집 : 기획감사실

양 주 군 보

제 186 호

양주군 공고 제 2000 - 208 호

양주군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4월 17일
양 주 군 수

양주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제명 : 양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주군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가. 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4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함.
 - 나.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점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071)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

□ 제정이유

주민의 자치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으로 함(안 제2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 18
-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행자부령 제87호, 2000.1.10)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00. 4. 17 ~ 5. 7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준칙안(경기도 행정(2)감사 16080 - 309호)
- 주민감사청구제 시행관련 지시공문(경기도 행정(2)감사16800-308호)
- 조례제정개폐관련 연서주민수 공고문
- 1999. 12. 31현재 양주군 읍면동별 인구통계
- 타시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추진현황
- 입법예고문(군보)